

# 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EU CCC and Origin Protocol 역외가공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of Outward Processing and Its Implication

- focused on the EU CCC and Origin Protocol -

안재진(Jae-Jin Ahn)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실 책임연구원, 경제학박사

## 목 차

I. 서 론	V.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II. EU 관세법령에서의 역외가공규정 주요 내용	참고문헌
III. EU 역외가공의 수입관세 면제 및 원산지규정	Abstract
IV.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역외가공과 원산지규정	

## Abstract

In modern manufacturing practice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send products to another country for special processing which cannot be performed inside the territory of the zone and Outward Processing(OP) covers such situation.

What's more, process and Rules of Origin(RoO) of OP is implicated in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ea-Singapore, Korea-EFTA and Korea-Asean FTA) because of the goods to be produce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us, In this paper analyse a implication of OP's process and RoO focused on the two fold : (1) provide an overview of the objectives, types, effects of Outward Processing described in customs law and FTA provisions of EU and Korea; (2)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Korean rules; (3) 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EU FTA negotiation

Key Words : Outward Processing(OP), Rules of Origin(RoO), Korea-EU FTA

## I. 서론

오늘날 국제무역의 증대는 최종재보다는 오히려 중간재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형태도 아웃소싱(outsourcing) 또는 역외가공무역(outward processing trade)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작았던 반면, 무역으로 거래되는 재화 및 무역의 형태가 중간재 또는 역외가공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고,<sup>1)</sup> 이로 인해 비기술집약적인 생산과정은 임금이 저렴한 후진국이나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출지향적인 홍콩의 제조업은 생산기반을 중국의 본토로 이전하였으며,<sup>2)</sup> EU의 경우에도 역내외 가공절차를 통해 대상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럽 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역외가공은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초기 단계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시설이 한 국가 내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및 반제품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경우<sup>3)</sup>에 이용된다.<sup>4)</sup> 다만, FTA가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MFN)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 반면, 역외가공규정은 역외국을 차별하고 체결당사국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FTA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도 KORUS FTA 타결과 한-EU FTA 협상에 이르기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외가공규정이라고 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외가공규정은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외가공규정과 그 범위 및 방법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일하다.

역외가공방식에 의한 교역의 인정 관련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우회수입과 같이 수출국을 경유하여 역외물품이 역내국으로 수입되어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FTA 협정상 역외가공과 관련한 별도의 원산지판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의한 원산지 검증작업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협상에서도 역외가공규정이 논의될 것인 바, EU의 CCC 및 Origin Protocol, EU가 체결한 주요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 원산지특례 규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홍콩의 제조업 산출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12%로 하락하고 제조업 고용은 50%에서 17%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규모는 같은 기간 5배 상승하였다.

2) Lok Sang Ho, Xiangdong Wei, Wai Chung Wong, "The effect of outward processing trade on wage inequality : the Hong Kong ca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7, September 2004, pp.242-243

3)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 원산지규정의 '역외가공'조항", 2006.06.23, pp.3-4 참조.

4) 예를 들어, 싱가포르를 지형적 특수성과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가에 공장을 설치하고 제품생산 공정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EFTA는 EU 국가들과의 지리적 인접성이나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통해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다.

## II. EU 관세법령에서의 역외가공규정 주요 내용

### 1. EU CCC상의 역외가공규정 정의

역외가공은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와 Commission Regulation 2454/93하에서 적용되는 EU의 관세면제조항으로, 추가적인 가공작업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관세지역으로부터 공동체 물품이 일시 수출되며, 이러한 가공작업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대응물품(compensating products)이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되는 경우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면제하는 제도이다.<sup>5)</sup>

이와 관련하여 EU의 관세법이라고 할 수 있는 CCC(Community Customs Code)에서는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Overseas Processing) 절차라 함은 추가적인 가공작업을 위해 관세동맹 역내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가공된 물품이 일부 또는 전부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아 자유유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6)</sup>

그런데,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사전수입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표준교환시스템(standard exchange system)하에서 사용되는 일시수출물품도 포함하고 있다.<sup>7)</sup> 또한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작업(processing operation)이라는 것은 물품생산(erecting, assembling, fitting), 가공(processing), 물품의 수선(repair of good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sup>8)</sup>

### 2. EU CCC상의 역외가공절차

#### 1) 역외가공의 승인 요건

역외가공에 대한 승인은 공동체(Community)내에 등록된 자(established person)가 신청한 경우 부여되는데, 대응물품<sup>9)</sup>이 일시 수출된 물품(temporary export goods)에 의해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역외가공절차의 이용에 대한 승인이 공동체에 있는 가공업자들의 기본적인 이익에 중대하게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수출을 통해 수입관세의 환급이나 면제(repayment or remission)가 유발되는 경우, 수출에 앞서 최종사용의 원칙하에 수입관세를 전액 면제받고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이 이루어지고 수입관세의 면제

5) Revenue, “Outward Processing Guidelines for Trader”, paragraph 1 ~ 2, 2004.11(www.revenue.ie).

6)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Official Journal L 302, 19/10/1992 P.0001-0050, 12 October 1992, Article 145.

7)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laying down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Official Journal L 253, 11/10/1993 P.0001-0766, July 1993, Article 762.

8)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op., cit, Article 114. 2. (c).

9) “Compensating Products” means all products resulting from processing operations(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op., cit, Article 145. 3. (c))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수출로 인해서 수출환불금(export refunds)이 허용되거나 대응물품의 수출로 인해서 수출환불금 이외의 기타 금융상의 이익이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의 공동체물품에는 역외가공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sup>10)</sup>

## 2) 역외가공 승인 유형

역외가공을 위한 승인은 목적에 따라 사전승인, 간이승인, 통합승인, 섬유류에 대한 승인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전승인(Prior Authorisation)은 물품이 수출되기 전 적절한 시간에 수리 또는 비상업적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위해 필요한 승인절차이다. 둘째, 간이승인(Simplified Authorisation)은 수리 또는 비상업적 물품의 역외가공작업이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한 세관신고로 이행되는 절차이다.

셋째, 통합승인(Single Community-wide Authorisation)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대한 역외가공 승인이며, 다수의 EU 회원국으로부터 역외가공을 위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역외가공 이용업체가 신청하는데, 신청인의 주요 소재지나 적어도 일시수출작업의 일부가 이행되는 회원국 국가에 제출된다. 넷째, 섬유류에 대한 역외가공 승인(Authorisation for Outward Processing of Textiles)은 의류(garment)로의 가공을 위해 수출되고 최종재를 위해 특별한 수입승인 없이 EC로 재수입되는 EC를 원산지로 하는 직물(fabric)에 대해서 내려진다.<sup>11)</sup>

## 3) 역외가공물품의 재수입 시기

대응물품이 공동체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으로 재수입되어야 하는 기간은 가공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일시 수출물품 및 가공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참고하여 결정되는데, 역외가공절차의 신청이 승낙된 날로부터 계산된다.<sup>12)</sup> 세관당국은 가공물품이 공동체의 관세영역으로 재수입되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허가를 득한 자가 요청할 경우 정당하게 입증된 요청서의 제출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세관당국은 수출(the rate of yield of the operation) 또는 수출의 결정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sup>13)</sup>

대응물품의 재수입은 첫째, 물품이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경우, 둘째, 면세지역(free zone) 또는 면세창고(free warehouse)<sup>14)</sup> 또는, 세관창고절차(customs warehousing)<sup>15)</sup>나 역내가공절차하에서 반입되는 경

10)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op.*, *cit.*, Article 146. 1.

11) Revenue, *op.*, *cit.*, paragraph 8 ~ 12.

12)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op.*, *cit.*, Article 754.

13)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op.*, *cit.*, Article 149. 1, 2.

14) 면세지역 또는 면세창고는 수출입관세의 징수가 유보된 화물의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역 및 창고를 말하는데, 공동체 관세영역의 일부 또는 관세영역 내에 위치해 있고 다른 부분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op.*, *cit.*, Article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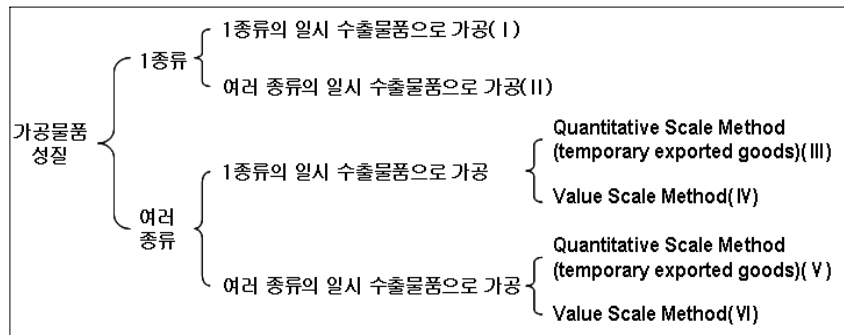
15) EU의 customs warehouse는 세관당국의 감독하에서 물품의 보관을 위해 운영되는 창고로써, 공영창고(public warehouse)와 민영창고(private warehouse)로 구분된다. 따라서 customs warehousing procedure는 이러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작

우, 셋째, 역외 공동체 운송절차(the external Community transit procedure)하에서 반입되는 경우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재수입 인정시점은 이러한 방법을 위해 승낙, 신고, 이용, 진입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sup>16)</sup>

### 3. 가공물품에 포함된 일시수출물품의 비율 계산

가공물품에 포함된 일시수출물품의 비율은 역외가공 절차에 따른 관세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위해 중요한데, 이는 EU의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 크게 수량측정방법(Quantitative Scale Method)과 금액측정방법(Value Scale Method)으로 구분되며, 가공물품의 성질 및 일시수출물품의 특성에 따라 6가지로 분류된다.<sup>17)</sup>

[그림 II-1] EU CCC상 대응물품 중 일시수출물품 비율계산 방법



자료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1/C269/01), Guidelines concerning Title III “Customs procedures with economic impact” of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Vol. 44, 2001.09.24, p.9 참고하여 제작성.

#### 1) 수량측정방법(Quantitative Scale Method)

##### (1) 대응물품(Compensating Products) 기준

이 방법은 한 종류의 대응물품이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일시수출물품으로 역외가공절차를 통해 가공되고 자유유통을 위한 통관이 이루어질 때, 통관시에 감면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즉, 감면되는 금액을 결정할 때 대응물품의 수량에 대한 일시수출물품의 수량은, 총 대응물품 수량의 비율에 상응하는 계수를 일시수출물품 총수량에 적용함으로써 계산된다.<sup>18)</sup>

업을 말한다(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op., cit, Article 98).

16)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op., cit, Article 754. 3, 4.

17)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op., cit, Article 151;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 op., cit, Article 77 3 ~ 775;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C269/01), op., cit, pp.9-12.

<표 II-1> 1종류의 일시수출물품/1종류의 가공물품

사례 I

-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100kg A(100kg A의 산출량 : 200kg X)
-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대응물품의 수량 : 180kg X
- 관세감면을 위해 인정되는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180/200 \times 100\text{kg} = 90\text{kg A}$

자료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1/C269/01), op., cit, p.9 참고 작성

<표 II-2> 여러 종류의 일시수출물품/1종류의 가공물품

사례 II

-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100kg A, 50kg B(100kg A, 50kg B의 산출량 : 300kg X)
-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대응물품의 수량 : 180kg X
- 관세감면을 위해 인정되는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 $180/300 \times 100\text{kg} = 60\text{kg A}$ ,  $180/300 \times 50\text{kg} = 30\text{kg B}$

자료 : <표 II-1>과 동일

(2) 일시수출물품(Temporary Export Goods) 기준

여러 종류의 대응물품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시수출물품으로부터 역외가공작업을 거쳐 제조되거나 일시수출물품이 서로 다른 종류의 가공물품에 포함된 경우, 이 방법에 의해 대응물품의 관세감면 금액이 결정된다.

일시수출물품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손실(constitute waste), 파편(scrap), 잔류물(residues), 조각(offcuts), 잔여분(remainders) 등 제2차 가공물품(secondary compensating products)은 포함되지 않는다.<sup>19)</sup>

<표 II-3> 1종류의 일시수출물품/여러 종류 가공물품(수량측정)

사례 III

-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100kg A
- 100kg A의 산출량 : 200kg X(85kg A 포함), 30kg Y(10kg A 포함) = 95kg 포함
- 가공물품별 포함 비율 계산 :
  - 1)  $200\text{kg X} = 85/95 \times 100\text{kg} = 89.47\text{kg A}$ , 2)  $30\text{kg Y} = 10/95 \times 100\text{kg} = 10.53\text{kg A}$
  - 3) 총 비율 = 100kg A
-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대응물품의 수량 : 180kg X & 20kg Y
- 관세감면을 위해 인정되는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 1)  $180\text{kg X} = 180/200 \times 89.47 = 80.52\text{kg A}$ , 2)  $20\text{kg Y} = 20/30 \times 10.53 = 7.02\text{kg A}$
  - 3) 총 감면수량 = 87.54kg A

자료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1/C269/01), op., cit, p.10 참고 작성

18)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 op., cit, Article 773.

19)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 op., cit, Article 773. 1, 3.

〈표 II-4〉 여러 종류 일시수출물품/여러 종류 가공물품(수량측정)

<p>사례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100kg A &amp; 50kg B</li> <li>▪ 100kg A &amp; 50kg B의 산출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kg X(85kg A &amp; 35kg B 포함), 2) 30kg Y(10kg A &amp; 12kg B 포함)</li> <li>3) 총 95kg A &amp; 47kg B 포함</li> </ol> </li> <li>▪ 가공물품별 포함 비율 계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kg X = <math>85/95 \times 100\text{kg} = 89.47\text{kg A}</math>, <math>35/47 \times 50\text{kg} = 37.23\text{kg B}</math></li> <li>2) 30kg Y = <math>10/95 \times 100\text{kg} = 10.53\text{kg A}</math>, <math>12/47 \times 50\text{kg} = 12.76\text{kg B}</math></li> <li>3) 총 비율 = 100kg A &amp; 50kg B</li> </ol> </li> <li>▪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대응물품의 수량 : 180kg X &amp; 20kg Y</li> <li>▪ 관세감면을 위해 인정되는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80kg X = <math>180/200 \times 89.47 = 80.52\text{kg A}</math>, <math>180/200 \times 37.23 = 33.51\text{kg B}</math></li> <li>2) 20kg Y = <math>20/30 \times 10.53 = 7.02\text{kg A}</math>, <math>20/30 \times 12.76 = 8.51\text{kg B}</math></li> <li>3) 총 감면수량 = 87.54kg A &amp; 42.02kg B</li> </ol> </li> </ul>
---

자료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1/C269/01), op., cit, p.11 참고 작성

## 2) 금액측정방법(Value Scale Method)

〈표 II-5〉 1종류 일시수출물품/여러 종류 가공물품(금액측정)

<p>사례 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100kg A</li> <li>▪ 100kg A의 산출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kg X(at EUR 12) = EUR 2,400, 2) 30kg Y(at EUR 5) = EUR 150</li> <li>3) 총 EUR 2,550</li> </ol> </li> <li>▪ 가공물품별 포함 비율 계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kg X = <math>2,400/2,550 \times 100\text{kg} = 94.12\text{kg A}</math>, 2) 30kg Y = <math>150/2,550 \times 100\text{kg} = 5.88\text{kg A}</math></li> <li>3) 총 비율 = 100kg A</li> </ol> </li> <li>▪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대응물품의 수량 : 180kg X &amp; 20kg Y</li> <li>▪ 관세감면을 위해 인정되는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80kg X = <math>180/200 \times 94.12 = 84.71\text{kg A}</math>, 2) 20kg Y = <math>20/30 \times 5.88 = 3.92\text{kg A}</math></li> <li>3) 총 감면수량 = 88.63kg A</li> </ol> </li> </ul>
--

자료 : <표 II-3>과 동일

Quantitative Scale Method에 의해 일시수출물품의 포함비율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 Value Scale Method이다. 그러나 역외가공허가권 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한 경우, 세관 당국은 2가지 방법에 의한 결과가 유사하다면 Quantitative Scale Method(일시수출물품 기준)를 적용할 수 있다.<sup>20)</sup>

각 유형의 대응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각 유형의 일시수출물품의 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응물품

20)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 op., cit, Article 774.1-3, Article 775.

의 총 관세가격에 대한 각 대응물품의 관세가격의 비율에 대응하는 연속적인 계수가 일시수출물품의 총 수량에 적용된다.<sup>21)</sup>

<표 II-6> 여러 종류 일시수출물품/여러 종류 가공물품(금액측정)

<p>사례 V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100kg A &amp; 50kg B</li> <li>▪ 100kg A &amp; 50kg B의 산출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kg X(at EUR 12) = EUR 2,400, 2) 30kg Y(at EUR 5) = EUR 150</li> <li>3) EUR 2,550</li> </ul> </li> <li>▪ 가공물품별 포함 비율 계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kg X = <math>2,400/2,550 \times 100\text{kg} = 94.12\text{kg A}</math>, <math>2,400/2,550 \times 50\text{kg} = 47.06\text{kg B}</math></li> <li>2) 30kg Y = <math>150/2,550 \times 100\text{kg} = 5.88\text{kg A}</math>, <math>150/2,550 \times 50\text{kg} = 2.94\text{kg B}</math></li> <li>3) 총 비율 = 100kg A &amp; 50kg B</li> </ul> </li> <li>▪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가공물품의 수량 : 180kg X &amp; 20kg Y</li> <li>▪ 관세감면을 위해 인정되는 일시수출물품의 수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80kg X = <math>180/200 \times 94.12 = 84.71\text{kg A}</math>, <math>180/200 \times 47.06 = 42.35\text{kg B}</math></li> <li>2) 20kg Y = <math>20/30 \times 5.88 = 3.92\text{kg A}</math>, <math>20/30 \times 2.94 = 1.96\text{kg B}</math></li> <li>3) 총 감면수량 = 88.63kg A, 44.31kg B</li> </ul> </li> </ul>
---

자료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1/C269/01), op., cit, p.12 참고 작성

### III. EU 역외가공의 수입관세 면제 및 원산지규정

#### 1. EU CCC상 수입관세의 면제

##### 1) 수입관세 면제의 의미

수입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는 역외가공 증인서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공동체 내에서 지위를 득한 자가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을 한 가공물품(대응물품)에 대해서 부여된다. 그러나 역외가공절차와 관련된 조건 또는 의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의 수입관세 면제는 부여되지 않는다.<sup>22)</sup>

대응물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는 금액은 역외가공절차의 신고서가 접수된 날의 수량 및 성질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가공생산품의 통관신고서가 접수된 날의 동 물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기타 항목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대응물품의 관세가격(customs value)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일시 수출물품의 가격<sup>23)</sup>을 고려하여 결

2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1/C269/01), op., cit, pp.9-12.

22)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op., cit, Article 150.



정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응물품의 관세가격과 적절한 방법에 의해 산정된 가공비용(processing costs)간의 차액으로 한다.

그러나 역외가공절차에 계류되기 전에 일시 수출물품이 최종사용(end use)을 목적으로 감세율로 자유 유통을 위해 통관되었고 그러한 감세율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조건이라면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입관세가 부과된다.<sup>24)</sup>

## 2) 관세면제의 방식

역외가공하에서 가공을 위해 수출된 물품의 관세면제 계산 방식은 크게 부가가치에 의한 방식과 관세차액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역외가공을 이용하는 거래자는 어떤 방식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나 일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이 아닌 경우 및 무관세(zero rate of duty)로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경우 부가가치방식이 이용될 수 없다.

### (1) 부가가치에 의한 방식(Added Value Method; AVN)

부가가치방식에 의해 면제되는 관세를 계산하는 경우, 관세는 수출된 물품을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EC 지역으로 대응물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sup>25)</sup>에 부과된다. 따라서 관세는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총 관세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대응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표 III-1〉 부가가치에 의한 관세면제 방식

#### 사례 I. (AVN 방식)

- 숙녀용 스커트(대응물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출
- 숙녀용 스커트의 관세율 : 11%
- 대응물품(compensating product)의 가격 : 원자재 + 가공비용 + 운임 + 보험료
  - 1) 원자재 가격 : EUR 8,000, 2) 가공비용 : EUR 3,000
  - 3) 운임 및 보험료(on reimport) : EUR 657, 4) 스커트의 총 관세가격 : EUR 11,657
- 관세부과 대상 부가가치
  - 1) EUR 3,657, 2) 관세율 @11%
- 납부할 관세 : EUR 3,657 × 0.11 = EUR 402.27

자료 : Revenue, *op.*, cit, paragraph 30 ~ 37. pp.13-16을 참고하여 작성

23) 일시 수출물품의 가격은 일반적인 가격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공인의 작업장으로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적재, 운송 및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일시 수출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 대응물품의 관세가격(customs value)과 가공비용(가공자의 작업장으로부터 공동체내로 대응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적재, 운송 및 보험료 포함)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24)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op.*, cit, Article 151.

25) 이러한 비용은 수출된 물품에 포함되며, 이를 포함한 가격이 대응물품의 총 관세가격이 된다.

(2) 관세차액에 의한 방식(Duty Differential Method; DDM)

관세차액방식의 관세면제는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상금액(hypothetical amount of duty)을 기초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응물품의 총 관세금액(full customs value of the compensating products)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계산해야 하며, 여기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수입관세액을 차감해야 한다.

만일, 가공을 위한 수출이 빈번한 경우 세관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면제 (aggregated discharge) 방법을 이용하여 승인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가공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평균관세율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정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세관은 최종계산을 할 수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평균관세율을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한다.<sup>26)</sup>

<표 III-2> 관세차액에 의한 관세면제 방식

<p>사례 II. (DDM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녀용 스커트 생산을 위해 수출된 원자재 관세율 : 9%</li> <li>▪ 숙녀용 스커트(대응물품)의 관세율 : 11%</li> <li>▪ 비용이 포함된 대응물품의 가격에 부과되는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된 원자재 가격 : EUR 8,000, 2) 가공비용 : EUR 3,000,</li> <li>3) 운임 및 보험료(on reimport) : EUR 657, 4) 스커트의 총 관세가격 : EUR 11,657</li> <li>5) 대응물품의 총 관세가격에 부과되는 관세(11%) : EUR 1282.27 (A)</li> </ul> </li> <li>▪ 가공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된 원자재의 가격 : EUR 8,000, 2) 면제될 수 있는 관세(@ 9%) : EUR 720 (B)</li> </ul> </li> <li>▪ Net Duty Payable(A-B) : EUR 1,282.27 - EUR 720 = EUR 562 (C)</li> </ul>
--

자료 : <표 III-1>과 동일

## 2. EU 관세법령에서의 역외가공 원산지규정

### 1) EU 관세관련 규정에서의 역외가공 원산지규정

EU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영토원칙의 예외로서 역외에서 가공 및 생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EU 공동체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수출된 원산지물품이 재수입된 경우 이는 비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된 상태와 같은 경우 그리고 수출되어 그 국가에 머무는 동안 양호한 상태(in good conditions)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이상의 어떠한 작업도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수입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공동체 밖에서 생산 및 가공된 경우라도 공동체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

26) Revenue, *op. cit.*, paragraph 30 ~ 37.

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즉,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공동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출하고 EU 공동체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작업을 행한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데, 동 원재료가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wholly obtained) 물품이거나 또는 수출되기 전에 최소작업 및 가공<sup>27)</sup>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러 가지 원산지 판정기준과는 달리 지역적인 제한규정을 EU 원산지규정에 삽입한 것으로, 최근 제조관행상 특별한 가공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가공과정을 하지 못할 경우, 제품을 다른 국가로 보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첫째, 수출된 물품은 수출한 국가로 재수입되어야 하며, 만일 수출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은 외부지역에서의 가공은 역외가공 및 유사한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sup>28)</sup>

따라서 이러한 작업 및 가공을 통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공 및 생산 후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된 원재료를 이용해 획득되어야 하며, 공동체 밖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total added value)<sup>29)</sup>가 최종제품의 공장도 가격(ex-works price)에서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sup>30)</sup> 다만, 이러한 규정은 HS 50류 ~ 63류에 해당하는 섬유제품(textile products)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 규정은 EU의 관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의 제7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sup>31)</sup> EU에서는 이와 같이 공동체 밖에서의 생산 및 가공작업을 통해 공동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을 역외가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2)</sup>

## 2) EU가 체결한 FTA에서의 역외가공 원산지규정

EU는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협상체제를 지지하면서 그 동안 2001년에 출범한 WTO/DDA 다자간 협상에 전념하기 위해 새로운 FTA 협상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EU도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는 국가들과의 FTA 전략을 중시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EU는 가장 많은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하였는데, 대부분 개도국이나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체결해 왔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U가 체결한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에서는 각 FTA별 특성에 맞는 원산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

27) 이는 최소작업 및 가공(minimal operations and processing) 또는 불충분 가공 및 작업(Insufficient operations and processing)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28)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information documents(Customs documents), "A U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Article 12(Comments)

29) 총 부가가치에는 원재료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된다.

30) EU Origin Protocols Title III(Territorial requirements) Article 12(1 ~ 3)

31) European Commission, "A Guide for traders on GSP rules of origin", Appendix II(Articles 66 to 97 of Regulation No 2454/93 as amended by Regulations (EC) Nos. 12/97, 1602/2000 and 881/2003; Annex 16), January 2007, Article 71.

32) EU Origin Protocols Title III(Territorial requirements) Article 12(7)

-EU FTA 체결시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역외가공과 관련된 규정은 거의 대부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EU의 원산지규정에는 역외가공과 관련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FTA 체결상대국의 지리적 특성, 양측간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EU에 유리할 때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C-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Association Agreement)에서는 Protocol 4의 제12조 협정 당사국 영역 밖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working or processing) 규정에 역외가공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협정에 의하면 “당사국에 의한 원산지 지위 획득은 협정 당사국 밖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당사국 내에 재수입된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역외가공 원산지인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동 물품(재료)이 협정 당사국에서 수출되기 전에 완전히 획득되거나(wholly obtained) 또는 불충분공정 이상 생산 또는 가공작업이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을 통해 획득된 물품이어야 하며, 협정 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된 총 부가가치가(total added value)<sup>33)</sup>가 최종제품 공장도가격(Ex-Works)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역외가공 원산지인정 특례규정은 HS 50 내지 HS 63류에 포함된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sup>34)</sup>하여 EU의 원산지규정에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IV.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역외가공과 원산지규정

### 1. 우리나라 관세법상 유사 규정

#### 1)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 요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로써,<sup>35)</sup> 교토협약에서는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이라고 하며, 어느 관세영역에서 자유 유통중에 있는 물품이 국외에서 제조·가공 또는 수선을 위하여 일시 수출되었다가 수입관세 및 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3) EU-이스라엘 FTA 협정문에 따르면, “총 부가가치는 역외에서 추가된 재료비를 포함하여 협정 당사국 밖에서 축적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EU의 원산지규정 또는 CCC의 내용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State of Israel, of the other part, 21.6.2001/L147, Protocol 4, Article 12.

35)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면제받고 재수입되는 세관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그 기본 내용은 동일하다.

본 감세제도는 일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등을 거친 후 재수입되는 경우에 감세하는 것인 바, 재수입물품은 일시 수출된 물품이 품명·품질·가치 등이 변경되어 재수입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sup>36)</sup> 다만, 품명, 품질, 가치 등에 변화가 있더라도 당초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재수입되어야 하며, 다른 물품으로 교체되어 재수입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재수입면세와 동일하다.<sup>37)</sup>

이 감세제도는 재수입되는 물품 중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등으로 가치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sup>38)</sup> 다만,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공업, 수리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관세 감세를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관례와 우리나라 관세법상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2) 감세대상 물품

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세대상 물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해외의 제조·가공 후 동일성이 상실된 재수입물품이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경감하는데, 내국물품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 또는 중간재가 되어 재수입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HS 세번이 변경되는 등 동일성이 상실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이다.<sup>39)</sup>

둘째, 해외의 가공·수리 후 동일성이 유지된 재수입물품이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제한 없이 관세를 경감하는데, 재수입면세제도의 요건에 해당되는 “수출당시와 동일한 상태”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HS 세번(10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이 유지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이다.<sup>40)</sup>

셋째, 감세제의 대상 물품이다. 감세대상 물품 중 당해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36)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와 구분된다.

37) Kyoto Convention에서는 재수입면세는 특별부속서 B에 규정하고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는 특별부속서 F에 규정함으로써 두 제도를 완전히 별개의 제도로 취급하고 있다.

38)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5.11, pp.428-429 참조.

39) 본 재수입물품은 국내산업 보호의 차원에서 HS 제85류(전기기기류) 및 HS 9006(사진기)로 제조·가공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즉,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혜택을 주지만 여타 산업이 해외임가공을 하는 경우 재수입되는 물품 전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해외임가공을 제한하는 취지로 보인다.

40) 예컨대, 고장난 자동차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자동차라는 동일성은 유지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인 것이다. 자동차 엔진 등 자동차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자동차를 조립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상실된 물품의 재수입과 구별되는 것이다.

##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상 역외가공규정

### 1) 개요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최근에 타결된 한-미 FTA, 그리고 협상중인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FTA 협상 과정에서 역외가공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그러나 Kyoto Convention이나 EU의 CCC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 규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규정은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다.

최근까지 타결된 FTA 협정 중에서 개성공단 생산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sup>41)</sup>는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상품무역협정, 한-미 FTA의 경우로써, 일정기준을 충족한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 역외가공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역외가공규정 주요 내용

#### (1) 한-싱가포르 FTA에서의 역외가공규정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역외가공과 관련하여 제4.4조(역외가공)에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속서 4C에 열거된 상품<sup>42)</sup>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sup>43)</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sup>44)</sup>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 되거나 불인정 공정<sup>45)</sup>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치고,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

41) 역외가공은 자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품을 해외공장에 공급한 후 해외공장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반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자국으로 재수입하게 되는데, 따라서 완성품의 가공은 자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시 당해 완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자국산 원재료 또는 부품을 원산지재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역외가공 조항의 핵심이다.

42) 부속서 4C에는 한-싱가포르 FTA 제4.4조(역외가공)와 관련하여 HS10단위 기준으로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21개 품목, 84류(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8개 품목, 85류(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개 품목, 89류(선박과 수상 구조물) 3개 품목, 90류(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및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개 품목 등 총 134개 품목이 포함된다.

43)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4.4조 제1항

44)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4.4조 제2항).

45) 불인정공정은 한-싱가포르 FTA의 4.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러한 불인정공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협정문에서 규정한 원산지상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공정을 말한다. 이러한 공정에는 (건조·냉동·염수장 보관과 같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

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고, 생산 또는 가공<sup>46)</sup>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47)</sup>

한편, 동 협정문에는 부속서 4C 이외에도 부속서 4B에서 HS 6단위 기준으로 4,625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경우 한국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한다고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sup>48)</sup>하고 있으며,<sup>49)</sup> 3개월간의 서면 통보를 통해서 품목리스트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sup>50)</sup> 즉, 이는 FTA체결 당사국의 역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체결국 영토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식<sup>51)</sup>인데, 물론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해야 하므로 사실상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sup>52)</sup>

<표 III-3> 한-싱가포르 역외가공 원산지인정 특례 규정

구 분	주요 내용
물품요건	비원산지 재료가격 40% 이하 + 원산지 재료가격 45% 이상
최종물품 가격기준	완제품 관세가격
역외가공 인정물품	HS 10단위 기준 총 134개 품목(부속서 4C) 39류 21개 품목, 84류 18개 품목, 85류 90개 품목, 89류 3개 품목, 90류2개 품목
개성공단 대상품목	1류~12류 제외 총 4,625개 품목(부속서 4B) : 개성공단 생산조건
지역제한	개성공단 + 한반도
협정조항	협정문 4.3조(특정물품의 취급), 제4.4조(역외가공), 부속서 4B & 4C
기타	직접운송(한국→싱가포르 직수입)

자료 :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포장의 변경 및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의장·상표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 부착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4.16조(불인정공정) 참고

46)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공정은 제4.16조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47)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4.1조 가호~바호

48)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4.3조; 부속서 4B 제1절 및 제2절

49)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부속서 4B에서는 HS 6단위 기준으로 제1류 내지 제12류(일부 제외)에 해당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특혜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HS 6단위 총 품목수 5,640개 중에서 4,625 품목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물품이라도(단, 동 품목들은 모두 개성공단지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5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 법령집」, 2006.03, pp.104-105.

51) 조명철·정승호, “한미 FTA와 개성공단 원산지문제”, 「KIEP 세계경제」, KIEP, 2006년 7-8월호, pp.110-111.

52) 싱가포르가 이처럼 개성공단 물품이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역외가공을 인정한 것은 이미 싱가포르가 대부분의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따라서 역외가공 인정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한-EFTA FTA에서의 역외가공규정

한-EFTA FTA에서 도입된 제한적 역외가공생상품의 원산지특례조항은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FTA측과의 협상과정에서 EFTA측이 개성공단이라는 특정지역을 협정문에 명시할 경우 WTO의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협정문에 대상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단,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거나 생산될 품목위주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기타 북한지역과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대상이 된다. 다만, 직접운송원칙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sup>53)</sup> 즉,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하지 않고 원산에서 노르웨이로 직접 운송할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sup>54)</sup>

<표 III-4> 한-EFTA FTA 역외가공 원산지인정 특례 규정

구 분	주요 내용
물품요건	역외가공 비용 10% 이하(품목제한 없음) 비원산지 재료가격 40%이하+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가격 60%이상(개성공단)
최종물품 가격기준	공장도가격(Ex-Works)
역외가공 및 개성공단 대상품목	HS 6단위 기준 총 267개 품목 39류 10개 품목, 40류 1개 품목, 42류 3개 품목, 61류 64개 품목, 62류 97개 품목, 64류 4개 품목, 70류 1개 품목, 71류 2개 품목, 73류 1개 품목, 81류 1개 품목, 82류 2개 품목, 83류 1개 품목, 84류 13개 품목, 85류 11개 품목, 87류 2개 품목, 90류 1개 품목, 91류 52개 품목, 96류(잡품) 1개 품목
지역제한	없음
협정조항	협정 부속서 I 제13조(영역원칙의 면제), 부록 4
기타	직접운송

자료 : 한-EFTA FTA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53) 한-EFTA FTA 협정문에 따르면, “본 협정문 하에서의 특혜대우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한-EFTA FTA 부속서 I. 제14조).

54) 김석오, “한-EFTA FTA 관세분야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관세와 무역」, 제37권 제419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5.09, pp.24-26 참조.



한-EFTA FTA에서의 역외가공의 적용은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I의 제13조(영역원칙의 면제) 내용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원산지 결정을 위한 영역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나 영역 원칙의 면제를 설명하고 있는 부속서 I의 부록 4의 내용을 충족할 경우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 후 재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5)</sup>

그렇다면 부록 4에서 영역원칙의 면제를 위해 적용되는 충족요건은 무엇인가. 한-EFTA FTA에서는 <표 III-4>에서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총 추가가격<sup>56)</sup>이 원산지 지위가 주장된 최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당해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불충분공정<sup>57)</sup>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야 한다.

둘째, 부속서 I의 부록 4에 규정된 267개 상품의 경우, 원산지 지위의 취득은 당해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추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 예를 들어 공단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sup>58)</sup>이 원산지 지위가 주장된 최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당해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재수입된 재료 또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3) 한-ASEAN FTA에서의 역외가공규정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에서도 역외가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하고 있다. 한-ASEAN FTA에서는 역외가공 문제가 협상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는데, 한국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 초기부터 한국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언급을 함에 있어 매우 높은 경계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ASEAN FTA 협정문에서는 법적 근거만 마련하고 있을 뿐 원산지 인정요건 및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양해각서(MOU)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sup>59)</sup>, ASEAN 각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HS 6단위 기준 232개 품목 중에서 각국이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들에 대한 개성에서의 역외가공을 허용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ASEAN 시장에서 특혜관세 혜택

55)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I. 제13조(영역원칙의 면제)

56) 총 추가가격은 수송비용을 포함하여, 당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축적된 비용뿐만 아니라 당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한-EFTA FTA 협정 부속서 I. 부록 4 5항 가호).

57) 불충분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I.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 참조.

58)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은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그리고 수송비용을 포함하여 축적된 기타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영역 안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이미 취득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원산지 투입요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한-EFTA FTA 협정 부속서 I. 부록 4 5항 나호).

59) 한-ASEAN FTA 협정 부속서 3, 제6조(Treatment for Certain Goods)

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60)</sup> 이 중에서 의류 24.8%, 시계 17.9%, 신발 12.8%, 편물의류 9.1% 등으로 허용품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sup>61)</sup>

〈표 III-5〉 한-ASEAN FTA 역외가공 원산지인정 특례 규정

구 분	주요 내용
물품요건	비원산지 재료가격 40%이하+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가격 60%이상
최종물품 가격기준	본선인도가격(FOB)
역외가공 및 개성공단 대상품목	HS 6단위 기준 ASEAN 회원국별 각 100개 품목
지역제한	없음
협정조항	협정 부속서 3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
기타	직접운송

자료 :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이들 개성공단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살펴보면, 당해 제품의 가격 중 역외산(비원산지) 재료비<sup>62)</sup>가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하이고, 동시에 당해 제품의 총 재료비 중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sup>63)</sup>이어야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다.<sup>64)</sup>

그러나 본 협정에서는 ASEAN측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증가로 인해 ASEAN측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세이프가드를 인정하고, 협정발효 5년 이후에 ASEAN측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 원산지특례조항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ASEAN 측의 원산지검증시에도 한국 세관이 지원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sup>65)</sup>

60) 김한성,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18호, KIEP, 2007.04.09, p.9.

61) 관세청, “한-아세안 FTA 발효 및 기업지원전략”, 관세청-무역협회 합동설명회, 2007.4.24 ~ 5.10, p.58.

62)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은 계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계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계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기타 모든 비용(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

63) 한-ASEAN FTA 협정 부속서 3 제4조 제1항

64) 관세청 공정무역과, “한-아세안 FTA 설명회 자료”, 2007.1.17 ~ 1.19, p.51.

65) 김석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下)”, 「관세와 무역」, 제39권 제436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02, pp.60-62 참조.

<표 III-6> ASEAN 회원국별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교환각서 주요 품목

HS(6단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42류	8		11	11	7	6	2	3	6
61류	22	22	5		4		12	13	4
62류	62	37	1		21	2	53	32	15
64류		29	2		15	24	4	14	27
84류	1	1	8	9	4	9	3	1	1
85류			18	20	13	14			
91류	2		28	28	22	28	12	19	22
합계	100	100	100	100	86	83	86	82	75

주 : 1) 류별 자세한 품목 내용은 한-ASEAN 상품무역협정 각국별 양허안 내용 참조  
 2) 42류(가죽제품), 61류(의류-편물제), 62류(의류-편물제 제외), 85류(전기기기:TV-VTR), 91류(시계)  
 자료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각국별 교환각서(MOU)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4) 한-미 FTA에서의 역외가공규정

한-미 FTA 타결 이후 아직까지 정식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외교통상부에서 발표된 부문별 협상결과의 내용 및 언론 발표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미 FTA에 있어서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문제는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차후 협의근거는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시 개성공단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뒤 한국에서 재가공 되어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국 영토외 지역의 상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였다. 그러나 결국 최종 타결시 양측은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하는 데에 합의하였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외가공 지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sup>66)</sup>

한-미 FTA 협상시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문제는 원래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sup>67)</sup>를 만들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기준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남북협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sup>68)</sup>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sup>69)</sup>

66) 이혜민, “한미 FTA 특별토론회 발제내용”, 세종정책연구과정 특별토론회, 2007.04.10, 세종연구소, p.3.  
 67)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발효 1년 후에 개최된다.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양국이 합의시에는 수시 개최도 가능하다. 본 위원회에서는 역외가공지역이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선정하며, 이러한 지역이 위원회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정한다. 또한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 역외가공지역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를 설정한다.  
 68) 미국이 초반의 협상부터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첫째,

따라서 협정 발효 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되고 역외가공문제가 실현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섬유, 신발, 가방 등의 제품 등이 미국에서도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sup>70)</sup>

다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협의근거만 마련되었을 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역외가공 인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는 달리 역외가공지역으로 개성공단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V.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 1. EU 및 우리나라 FTA 역외가공규정의 특징

#### 1) EU의 역외가공규정

EU는 크게 CCC와 원산지 Protocol에서 역외가공과 관련하여 역외가공의 정의, 승인 등 절차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역외가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 관세의 면제비율 등 방법과 역외가공 인정 비율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법령과 이행지침을 두고 있다.

즉, 최종제품에 포함되는 원재료인 일시수출물품의 비율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량기준은 다시 대응물품 기준과 일시수출물품의 비중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일시수출된 물품이 최종제품에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가 결정되면 수입관세의 면제를 위해 부가가치에 의한 방식과 관세차액에 의한 방식을 통해 수입되는 최종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중에서 면제되는 금액이 결정되며, 이러한 면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납부할 관세액이 산정된다.

한편,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임가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HS 변경 등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은 역외가공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EU에서는 역외가공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역외가공 물품이 역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가공을 위한 원재료가 역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어야 하며, 역외가공을 위해 수출되기 전에 최소 작업 및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역외가공 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에서 역내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개성공단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위조지폐 제작, 핵개발, 미사일 발사, 마약밀매, 인권 등이— 문제로 현재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69) 박현수 외,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7.04, p.28.

70)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2007.4.4, p.11.

획득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내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제품의 가격기준은 공장도가격(Ex-Works)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EU 역내 규정에서만 아니라 EU가 체결한 일부 FTA에서 역외가공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FTA에서는 역외가공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즉, EU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EU 공동체 밖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몇몇 FTA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외가공규정은 EU의 관련 법령에서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품목과 관련하여 HS 50류 내지 63류에 포함된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역외가공규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2) 우리나라 FTA의 역외가공규정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해외입가공물품에 대한 감세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규정은 WCO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령 내용에서는 WCO 및 EU의 역외가공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절차 및 관세감면 규정 등은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한편,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특례조항은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모두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인정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V-1〉 FTA별 역외가공 원산지인정 특례 비교

구 분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상품)	한-미
물품요건	비원산지 재료가격 40% 이하 + 원산지 재료가격 45% 이상	역외가공 비용 10% 이하 비원산지 재료가격 40% 이하 +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가격 60% 이상	비원산지 재료가격 40% 이하 +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가격 60% 이상	COPZKP 구성 후 별도 논의
최종물품 가격기준	완제품 관세가격	공장도가격 (Ex-Works)	본선인도가격(F0B)	
역외가공 인정물품	HS 10단위 기준 총 134개 품목	품목제한 없음	HS 6단위 기준 역외가공 기준 규정	
개성공단 대상품목	1류 ~ 12류 제외 총 4,625개 품목	HS 6단위 기준 총 267개 품목	ASEAN 회원국별 각 100개 품목(MOU)	
지역제한	개성공단 + 한반도	없음	없음	
협정조항	특정물품 취급	영토조항예외	특정물품취급	
기타	직접운송(직수입)	직접운송	직접운송	

자료 : 각 FTA 협정문의 역외가공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즉, 일반적인 역외가공 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 특정물품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EFTA FTA에서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역외국에서 발생한 역외가공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역내산 물품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동남아, 중국 등을 이용한 역외가공도 가능하다. 이상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역외가공 물품 및 원산지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시사점과 대응방안

### 1) 한-EU FTA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한-EU FTA 협상이 2007년 5월 7일 시작되어 1차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세부 분야에 대한 본격적 협상은 2차 협상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차협상에서는 상품에 대한 양허, 규범, 서비스 등에 대해서 다루어지겠지만 FTA의 대표적 중요 분야의 하나인 원산지규정도 첨예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는 역외가공규정 특히 개성공단물품의 원산지특례와 관련하여 FTA 협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의 경우 그간 체결해온 여타 FTA를 보더라도 역외가공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FTA에서는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문제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또한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한-싱가포르-FTA로부터 한-ASEAN FTA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역외가공 인정방식과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FTA 역외가공 원산지규정은 그 의미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원산지규정(Protocol)에서는 영토원칙의 예외로서 역외가공 원산지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스라엘과의 FTA 협정 체결시에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특례가 필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한도는 역외가공의 비중이 최종제품의 10% 이하로서 상당히 엄격한 수준이고, 이나마 대부분의 FTA에서는 도입되지 않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에 EU의회 내에서도 개성공단 물품이 한-EU FTA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측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며, 한-미 FTA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유럽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문제도 아니며, 무역문제라기 보다는 정치문제라는 인식이 강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노동자들도 값싼 임금으로 만든 외국제품이 문제라면 중국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71)</sup>

또한 한-EFTA FTA에서는 EU의 원산지규정에 합치하는 일반적인 역외가공조항으로써 10% 이하의 역외가공규정을 이끌어 냈으며, 역외가공 원산지제도의 변형된 형태로 제한적으로 비원산지 재료가격 40% 이하 및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가격 60% 이상으로 267개 품목에 대해서 개성공단 원산지특례 규정을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가 체결한 이스라엘과의 FTA에서도 역외가공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델로 하여 협상시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면 한-EFTA FTA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협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역외가공 규정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 활성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의 제조업은 그 생산기반을 홍콩의 본사로부터 중국의 본토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홍콩 자체의 무역규모도 제조업 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도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에 공장을 설치하여 제품 생산공정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바, 싱가포르의 영토적 특수성과 이에 따른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히 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도 유로화 출범과 국제적인 관세인하 추세로 유럽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서 EU 기업들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 생산거점의 동구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기업들에 의해 동구권은 점차 범유럽 생산기지로 활용되어 가고 있으며, 결국 범유럽 차원의 분업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기존에는 섬유/의류, 신발, 가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정보통신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역외가공무역은 동서 유럽간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교역, 직접투자 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분업체제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다.<sup>72)</sup>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역외가공제도의 활용정도가 미미한 상태이나, 우리나라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 제도의 활용 정도 및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FTA 체결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은 FTA 협정상에 포함된 개성공단을 활용한 역외가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는 개성공단 이외의 역외지역을 활용하여 역외가공무역을 통한 무역규모 확대를 추구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상 역외가공은 주로 개성공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한-EFTA 및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서는 일반적인 역외가공규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71) EU 의회 글린포드 의원, “한-EU FTA에 개성공단 포함되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 자료, 국정브리핑, 2007.5.15.

72) 김태현, “EU의 동유럽 통합 확대가 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U학 연구」, 제7권 제1호, 한국 EU학회, 2002.8.30, pp.63-96 참조.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들은 일부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등 제품의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여 기업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된 공정의 부가가치는 원산지 결정시 비원산지 부가가치로 간주되지만 FTA에서 역외가공조항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해외에서 수행된 공정의 부가가치도 국내 부가가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역외가공규정을 활용하면 글로벌 생산기업의 제품이 원산지 인정을 통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EFTA FTA에서 규정된 일반적 역외가공규정<sup>73)</sup>에서는 공장인도가격 기준으로 역외가공 비용이 10% 이하이며 원산지재료가 역내에서 완전획득 또는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경우 품목여부와 관계없이 역외가공을 통한 원산지 특혜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나 종합보세구역 등에서 중국 등 역외가공 지역을 활용하여 반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무관세로 반입하여 최종 가공을 거쳐 FTA 체결국(EFTA 회원국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수출할 경우 해외에서의 역외가공 부분이 역내 부가가치로 인정되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sup>74)</sup>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역외가공규정의 대부분은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과 관련이 있는 제한적 역외가공규정이다. 이 경우에도 역외가공규정을 이용한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개성공단 제품은 무관세로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 인정 규정을 이용하면 무관세로 FTA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생산된 시계의 무브먼트(HS 9108)와 케이스(HS 9112)를 생산한 후 북한에서 생산된 섬유제 시계줄(HS 9113)을 이용하여 최종제품으로 생산<sup>75)</sup>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ASEAN 회원국에 수출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역외가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외가공 사전허가, 역외가공에 대한 수출책정 및 수출에 따른 관세경감 혜택 부여, 역외가공물품의 확인식별 요건, 역외가공 기한 및 기한의 연장, 역외가공 중 일시수출물품에 대한 면세조항 등 WCO Kyoto Convention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법령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3) 역외가공비용이 최종재 가격대비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품목 여부와 관계 없이 역외가공 부가가치는 국내 부가가치로 인정된다.

74) 우리나라에서 US\$100 상당의 전동기(HS 8501.20-1000) 부품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US\$150 상당의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한 후 공장도가격 기준 US\$500 상당의 최종 완제품을 만들어 EFTA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별한 품목제한이 없기 때문에 역외국으로 원재료가 수출되기 전에 완전생산 또는 불인정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되면 된다.

75) 관세청, "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 맞춤형 기업컨설팅 서비스 제공", 2007.02.01, pp.11-12 참조.



## 참 고 문 헌

- 관세청, “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 맞춤형 기업컨설팅 서비스 제공”, 2007.02.01.
- 관세청, “한-아세안 FTA 발효 및 기업지원전략”, 관세청-무역협회 합동설명회, 2007.4..
- 관세청 공정무역과, “한-아세안 FTA 설명회 자료”, 2007.1.17 ~ 1.19.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5.11.
- 김석오, “한-EFTA FTA 관세분야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관세와 무역」, 제37권 제419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5.09.
- 김석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下)”, 「관세와 무역」, 제39권 제436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02.
- 김태현, “EU의 동유럽 통합 확대가 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U학 연구」, 제7권 제1호, 한국 EU학회, 2002.8.30.
- 김한성,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18호, KIEP, 2007.04.09.
- 박현수 외, “한미 FTA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Issue Paper」, SERI, 2007.04.
-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2007.4.4.
- 외교통상부,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및 부속서
- 외교통상부, 한-EFTA FTA 협정문 및 부속서
-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협정문 및 부속서
- 이혜민, “한미 FTA 주요 내용”, 세종정책연수과정 특별토론회, 2007.04.10, 세종연구소.
- 조명철·정승호, “한-미 FTA와 개성공단 원산지문제”, 「KIEP 세계경제」, KIEP, 2006.7-8.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 법령집」, 2006.03.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 원산지규정의 ‘역외가공’조항”, 2006.06.23.
- Lok Sang Ho, Xiangdong Wei, Wai Chung Wong, “The effect of outward processing trade on wage inequality : the Hong Kong ca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7, September 2004.
- Revenue, “Outward Processing Guidelines for Trader”, 2004.11(www.revenue.ie).
-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Official Journal L 302, 19/10/1992 P.0001-0050, 12 October 1992.
-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laying down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Official Journal L 253, 11/10/1993 P.0001-0766, July 1993.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uidelines concerning Title III “Customs procedures with

economic impact” of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2001/C269/01, Vol. 44, 2001.09.24.

European Commission, “A U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Commission information documents(Customs documents),

EU Origin Protocols(EEA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2007.04.27.

European Commission, “A Guide for traders on GSP rules of origin”, Appendix II(Articles 66 to 97 of Regulation No 2454/93 as amended by Regulations (EC) Nos. 12/97, 1602/2000 and 881/2003; Annex 16), January 200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State of Israel, of the other part, 21.6.2001/L147